
Policy and Law Report _Vol.16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12.~12.18.) -

December 2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을 발표함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을 발표함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63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됨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table border="1"> <tr> <td>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td><td>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td><td>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td></tr> </table>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2022-12-14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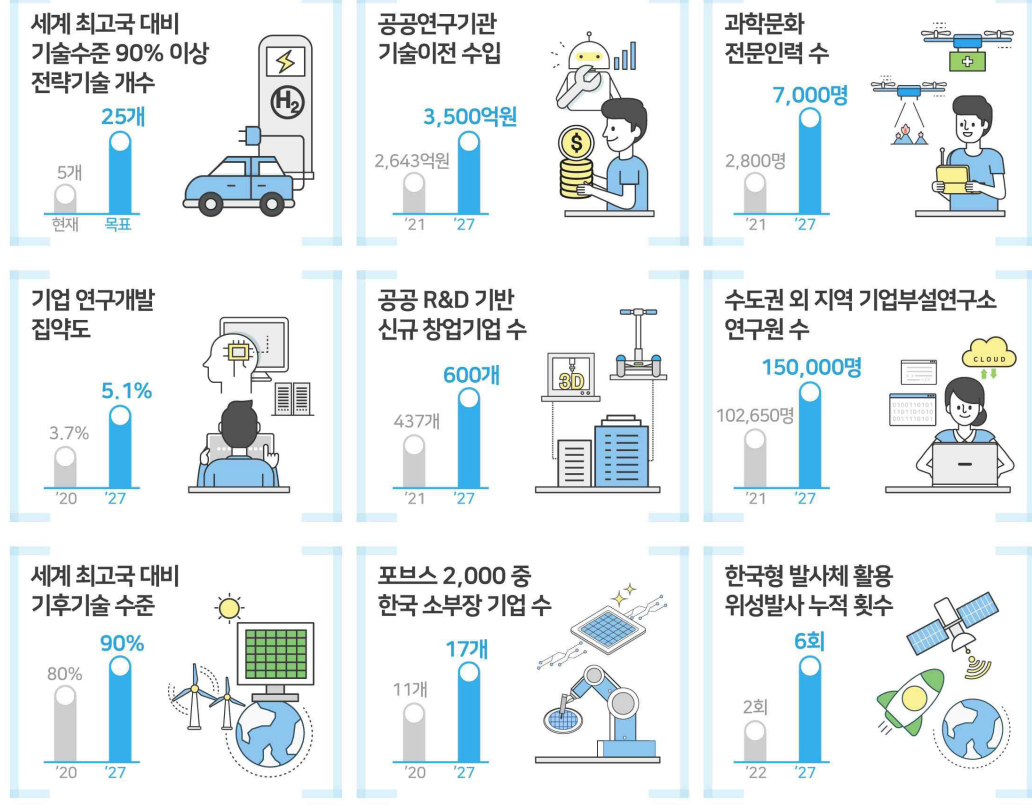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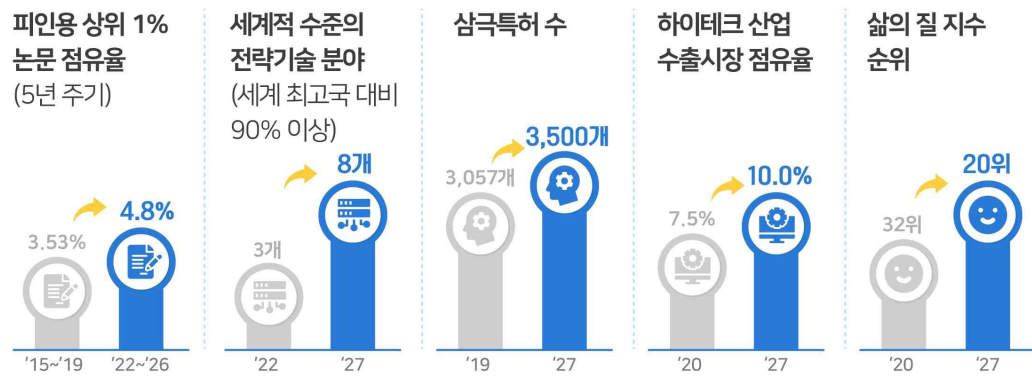
부처	내용	일시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 되었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 <세부 추진 과제 > <table><tr><th>대표 지표</th><th>목표</th></tr><tr><td>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5년 주기) ※ 한국연구재단</td><td>3.53%('15~'19) → 4.8%('22~'26)</td></tr><tr><td>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td><td>3개('22) → 8개('27)</td></tr><tr><td>삼극특허 수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td><td>3,057개('19) → 3,500개('27)</td></tr><tr><td>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td><td>7.5%('20) → 10.0%('27)</td></tr><tr><td>삶의 질 지수 순위 ※ 경제협력개발기구(Better Life Index)</td><td>32위('20) → 20위('27)</td></tr></table>	대표 지표	목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5년 주기) ※ 한국연구재단	3.53%('15~'19) → 4.8%('22~'26)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개('22) → 8개('27)	삼극특허 수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3,057개('19) → 3,500개('27)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7.5%('20) → 10.0%('27)	삶의 질 지수 순위 ※ 경제협력개발기구(Better Life Index)	32위('20) → 20위('27)	
대표 지표	목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5년 주기) ※ 한국연구재단	3.53%('15~'19) → 4.8%('22~'26)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개('22) → 8개('27)													
삼극특허 수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3,057개('19) → 3,500개('27)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7.5%('20) → 10.0%('27)													
삶의 질 지수 순위 ※ 경제협력개발기구(Better Life Index)	32위('20) → 20위('27)													

부처	내용	일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 비전(안)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 혁신 전략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전략2 혁신주체의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문제 해결 전략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탄소중립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디지털전환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의료/복지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재난/위기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공급망/자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국방/안보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 주권 수호 우주/해양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기술패권 경쟁 대응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로봇·제조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 대표 성과지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대표 성과지표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부처	내용	일시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위원회가 각 부처와 함께 추진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함 동 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며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연구개발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 약 1,500억원 투자 등 국민체감 선도과제 본격 추진 -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전담팀 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중 - 이중 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기기로 함 *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맞춤형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통합 시범서비스 등 - 나머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 제공 * ▲중소·개척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② 차표예매·휴양림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화 < 시범서비스 현황 > <table><tr><td>1</td><td>SRT 기차승차권 예매</td><td>4</td><td>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td></tr><tr><td>2</td><td>자동차 검사 예약</td><td>5</td><td>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td></tr><tr><td>3</td><td>자연휴양림 예약</td><td>6</td><td>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td></tr></table> ③ 국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종이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며,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 - 또한,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 지원 ④ 공무원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공직사회 디지털 전문역량 강화 ⑤ 인공지능 일상화 및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구상(안) 등 논의	1	SRT 기차승차권 예매	4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2	자동차 검사 예약	5	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3	자연휴양림 예약	6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2022-12-15
1	SRT 기차승차권 예매	4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2	자동차 검사 예약	5	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3	자연휴양림 예약	6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부처	내용	일시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23~’32)」을 심의·확정함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함 탄소중립, 에너지, 환경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이행안*의 기술 내용 분석,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발생원 구성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현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R&D)을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함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됨 <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 >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온실가스 감축</th><th>② 기후변화 적응</th><th>③ 혁신생태계 조성</th></tr> </thead> <tbody> <tr> <td>① 무탄소 에너지 생산</td><td>①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td><td>①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td></tr> <tr> <td>② 에너지시스템 전기화</td><td>②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td><td>②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td></tr> <tr> <td>③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td><td>③ 기후적응형 도시·기반시설 구현</td><td>③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td></tr> <tr> <td>④ 에너지소비효율 향상</td><td>④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td><td>④ 정책 활성화 및 정책 역량 강화</td></tr> <tr> <td>⑤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td><td>⑤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td><td></td></tr> <tr> <td>⑥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td><td></td><td></td></tr> </tbody> </table> 제1차 기후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 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혁신생태계 조성	① 무탄소 에너지 생산	①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①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②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②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②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③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③ 기후적응형 도시·기반시설 구현	③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④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④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④ 정책 활성화 및 정책 역량 강화	⑤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⑤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		⑥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2022-12-15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혁신생태계 조성																					
① 무탄소 에너지 생산	①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①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②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②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②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③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③ 기후적응형 도시·기반시설 구현	③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④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④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④ 정책 활성화 및 정책 역량 강화																					
⑤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⑤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																						
⑥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부처	내용	일시
<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방향성  비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新시장 선점  방향성 탄소중립 실현 기여 新성장동력 및 에너지안보 확보 기후위기 적응 강화 기본 방향(안) 전략1. 온실가스 감축  1-1. 무탄소 에너지 생산 1-2. 에너지 시스템 전기화 1-3. 탄소배출연·원료의 대체 1-4.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1-5.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1-6.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전략2. 기후변화 적응  2-1.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2-2. 선제적인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2-3. 기후 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2-4. 과학기술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2-5.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 전략3. 혁신 생태계 조성  3-1.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3-2. 연구/산업 현장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3-3.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3-4.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23.1.1.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추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제25조의2제1항제4호, 제46조의2 신설) ②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78조제2항) ③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제88조의3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④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제88조의4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2022-12-13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2.12.13. 시행)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5년 → 10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기록하다"로 순화하려는 것임 (제14조제1항, 제50조의3제1항, 부칙 제2조)	2022-12-1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3.1.14. 시행)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2022-12-13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16. 시행)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수소로 발전한 전기의 판매 · 공급과 관련된 수소발전량 구매 · 공급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6호, 2022. 12. 14.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가요건,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2022-12-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12. 시행) 축산물 도축 · 제조 · 가공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업소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을 위한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력추적관리를 행정처분의 대상인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 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용어를 "유해 화학물질"에서 "유해물질"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및 제2호 등)	2022-12-1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됨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 (안 제1조제2항) – 소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빨대·젓는막대 중 생분해성수지 재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의견 제시기간 : 12/13(화)~2023/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2-12-13
국토교통부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령·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보를 명시 (안 제8조의2)	2022-12-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 (안 제20조제1항제3호) ※ 의견 제시기간 : 12/16(금)~2023/1/26(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로 제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 (안 제9조제1항) ②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9조제2항) ③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 의견 제시기간 : 12/16(금)~2023/1/26(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로 제출	2022-12-1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과장급 직위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12/12(월)~12/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로 제출	2022-12-1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u>」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바,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 관련 정보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개인금융채무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②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022-12-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들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④ 채무조정 기준·절차 및 효력 (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 개별 채권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을 할 때 보수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개인금융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들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채권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들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⑤ 손해배상책임 등 (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2022-12-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재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거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국외에 두거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주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자국산업의 보호,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계가 자국이나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글로벌 공급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여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배 상향 적용함으로써 핵심전략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2022-12-0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 되었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그런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경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신용정보업의 경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간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2022-1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사실확인자료제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출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3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4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제4호) ②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량 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5호 삭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제5호 신설)	2022-12-0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도매제공의무는 201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 지난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알뜰폰 시장은 도매제공의무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전화 회선수 점유율이 16.1%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며 안정 궤도 진입에 성공함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특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업자가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알뜰폰 이용자가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 응대 인력 부족으로 위치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함	2022-12-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2022년 9월부로 도매제공의무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알뜰폰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와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에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이에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8조 등)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형 영화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22-1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 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4조 등)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의2 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V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 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35조) ② 공동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안 제39조)	2022-12-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직권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안 제66조제6항)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의원 등 10인)」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출원 보정에 대한 기한이 조문 간에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함 (안 제36조제2항 삭제) ②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도록 함 (안 제51조제5항 신설) ③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 요건을 서류 또는 서면의 미제출로 명확히 함 (안 제51조제6항 등) ④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음 (안 제51조의2 신설) ⑤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하도록 함 (안 제51조의3 신설) ⑥ 출원의 보정에 대한 기한을 조문 간 일치시킴 (안 제124조제1항 및 제186조제3항)	2022-1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2022-12-1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됨.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9조 등)	2022-12-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됨.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제3항 등)	2022-12-1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3인)」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2022-1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 (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2022-12-15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2/19(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 - 종합국력	
	12/19(월)	「국회도서관 웹진」 제56호 발간 - 개관 70주년을 돌아보며	
	12/20(화)	「지방의정 뉴스레터」 제4호 발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12/21(수)	「현안 외국에선?」 제50호 발간 - 싱가포르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	
	12/22(목)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4호 발간 -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예산정책처	12/20(화)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12/20(화)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4호 발간	
	12/20(화)	「NABO 경제동향」 12월호 발간	
	12/23(금)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21호 발간	
입법조사처	12/20(화) 14:30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2/22(목) 13:30	「2022년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본 정치 양극화의 미래」 학술 대회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별첨1】 제401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과방위	12/20(화) 14: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문체위	12/20(화) 14:00	문화예술 법안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9(월) 10:00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김윤덕, 강훈식, 김경협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19(월) 14:00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서영교, 김한정, 신정훈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20(화) 10:00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
12/20(화) 10:00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김성주, 조해진 의원실, ERRI 경제개혁연구소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20(화) 10:00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책 세미나	정태호 의원실, 그린수소사회연구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
12/20(화) 14:00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강병원, 김성원, 박상혁,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1(수) 14:00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나아갈 방향	이종배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22(목) 14:00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	김병욱, 김정재,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5(월)	「팩트북」 제99호 발간 - 기술 패권	
입법조사처	12/15(목)	[이슈와 논점] -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12/15(목)	[NARS 현안분석] -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12/16(금)	「NARS 입법영향분석」 -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2(월) 10:00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설훈·이원욱·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12(월) 10:00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임오경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12(월) 14:00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이인영 의원실, (사)한국OTT포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3(화) 07:30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 (다운로드 파일 1, 다운로드파일 2) -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23년 세계한인경제인 의 역할은?	이원욱·김석기 의원실,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등	여의도 글래드호텔
12/13(화) 14:00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	조명희·변재일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4(수) 10:00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수립 방안 모색 (다운로드 파일 1, 다운로드파일 2)	윤창현 의원실, 한국유통학회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5(목) 10: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이상헌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5(목) 14:00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우원식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16(금) 14:00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 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한국정책개발학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